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9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안 부칙 제690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7. 30.~8. 3.)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9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0월 31일”을 “2021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6905호, 2018. 10. 4.>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 제3항의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 한은 <u>2020년 10월 31일까지</u> 로 한 다.	부칙 <제6905호, 2018. 10. 4.>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 <u>2021년 10월 31일</u>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추가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김철묵(☎ 2133-6732)